

성결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

[실시설계]

- 전기소방 -

(일반시방서/특기시방서)

2026. 01.

YnP
ARCHITECTS

와이엔피건축사사무소

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94길 51-10, 석범빌딩 3F

소 방 시 방 서

성결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

2025. 11.

(주) 하 이 텍 엔 지 니 어 링

제 2021-01-00068호

TEL : (02) 3285-6599

소방설비기사 배 기 돈
(전기)

목 차

I . 일반사항

1. 공통사항
2. 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
3. 유도등 설비공사
4. 비상조명등 설비공사
5. 비상방송 설비공사

I . 일반사항

1. 공통사항

가. 소방시설 적용 기준

(1) 비상방송 설비

- 1) 연면적 3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것

(2) 자동화재탐지 설비

- 1) 공동주택,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운동시설 업무시설, 공장, 창고시설,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,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,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·군사시설, 방송통신시설, 발전시설, 관광 휴게시설, 지하가(터널은 제외한다)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.

(3) 자동화재속보 설비

- 1) 업무시설, 공장, 창고시설,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·군사시설, 발전시설(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)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것

(4) 시각경보기

- 1) 의료시설, 노유자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발전시설 및 장례식장.

(5) 유도등 설비

- 1) 피난구유도등,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(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)에 설치하여야 한다.

(6) 비상조명등 설비

- 1)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.

(7) 무선통신보조 설비

- 1)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.

(8) 비상콘센트 설비

- 1)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.

2. 자동화재탐지설비 공사

가. 경계구역의 선정

(1)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.

- 1)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
 - 2)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. 다만, 500㎡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
 - 3)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㎡ 이하로 하고 한번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. 다만,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,000㎡ 이하로 할 수 있다.
 - 4) 지하구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
- (2) 계단(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. 이하 같다)·경사로(에스컬레이터 경사로 포함)·엘리베이터권상기실·린넨슈트·파이프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,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(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)로 하고,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(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)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.
- (3)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·주차장·창고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(4) 스프링클러설비·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.

나.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

(1) 주수신기 : R형 종합 수신기

설치위치 : 지하1층 중앙관제센터(방재실)

(2) 수신기 설치 기준

- 1)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. 다만,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.
- 2)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. 다만,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(이하 "주수신기"라 한다)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3)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
- 4) 수신기는 감지기·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

- 5) 화재·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·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
- 6)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
- 7)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.8m 이상 1.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
- 8)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
- 9) 수신기에는 화재표시작동시험, 회로도통시험, 동시작동시험 기타 필요한 기능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함.

(3)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

- 1) 설치기준 (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,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)
 - A. 감지기(차동식 분포형 제외)는 환기구등 공기도출구로부터 1.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.
 - B.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.
 - C.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,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, 공칭작동 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 - D. 차동식 스포트형,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.

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구분		감 지 기 의 종 류				
		차동식 스포트형		정온식 스포트형		
		1 종	2 종	특종	1 종	2 종
4 M 미만	내 화 구 조	90	70	70	60	20
	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	50	40	40	30	15
4 M~ 8 M	내 화 구 조	45	35	35	30	
	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	30	25	25	15	

(단위 : M²)

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- 2 종

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- 1 종 65 ° C

- F. 스포트형 감지기는 45 °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.
- G.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
 -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
 -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변과의 수평거리는 1.5m 이하가 되도록 하고,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(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) 이하가 되

도록 할 것

-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
-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
- 검출부는 5°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
-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.8m 이상 1.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

2) 연기식 설치기준

A. 연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바닥 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.

부 착 높 이	연 감 지 기		
	1 종	2 종	3 종
4 M 미만	150	150	50
4 M ~ 20 M	75	75	

(단위 : M²)

- B. 감지기는 복도,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.
- C. 천정 또는 반자가 낮은 옥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.
- D. 천정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.
- E.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.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.
- * 연기식 감지기 2종을 설치할 것.

3)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

- A.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
- B.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cm 이내로 설치할 것
- C.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cm 이상으로 할 것
- D.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.5m 이하, 2종 3m 이하로 할 것.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, 2종 1m 이하로 할 것
- E.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
- F.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
- G.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
- H.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(示方)에 따라 설치할 것

4)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, 다 신호 방식의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. 다만,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수 있

다.

(4)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

1) 설치기준

- A.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.
- B. 5층 (지하층 제외)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,000㎡ 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과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.
- C.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수 있도록 할 것.

2) 구조, 성능

- A. 정격 전압의 80%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.
- B.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.
- C.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.

3)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

- A. 복도·통로·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(로비, 회의실, 강의실, 식당, 휴게실 등)에 설치 할 것
- B. 공연장·집회장·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
- C.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.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.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.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
- 4)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

(5)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

1) 설치기준

- A.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그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.8M - 1.5M 높이에 설치할 것.
- B.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. 다만, 복도또는 별도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.
- C. 발신기의 윗부분에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적색 표시등을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.

(6)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

1) 상용 전원 설치기준

- A.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 저압기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.
- B. 개폐기에는 "자동화재탐지설비용" 이라고 표시를 할 것.
- C. 자동 절환 장치 구조로 되어야 한다.

2) 비상전원 설치기준

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(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

(7)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

1) 설치기준

- A.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2)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, 그 밖의 배선(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 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)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2)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 할 것.
- B. 금속관 공사, 후렉시블 케이블관 공사,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의 방법에 의하여 할 것.
- C. 상시 개로식의 배선에는 쉽게 도통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끝부분에 발신기 누름 스위치, 중단 저항을 설치할 것.
- D.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,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할 것.
- E.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, 덕트몰드 또는 폴박스등에 설치할 것. 다만, 60V 미만의 약전류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F. 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 할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.
- G.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회로의 전로 저항은 50Ω이하가 되도록 할 것.

(8) 배선공사

- A. 배선공사에 관한 일반사항은 전기 배선공사 시방에 따른다.

(9) 특기시방

- A. 스프링클러, 소화가스설비 및 소화전등의 각 제어 판넬은 MAIN GRAPHIC PANEL 및 종합감시반과 연동 되도록 SYSTEM을 구성하고 중단저항은 각 PANEL 단자대에 접속한다.
- B. 전층 배선순서 및 GRAPHIC PANEL 제작순으로 발신기의 번호를 부여하고 발신기 1회로에 2종류의 감지회로 구성시 반드시 10P 단자대를 사용 하며 중단저항은 단자대 내부에 처리토록 한다.

- C. 청정가스설비 감지기는 1방사구역에 한종류 감지기가 동작하면 바로 SIREN 경종토록하고 2종류 감지기가 동작하면 SOLENOID VALVE 가 동작할수 있는 SYSTEM으로 한다. 청정가스설비 등 가스설비의 수동식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수 있는 비상스위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.
- D. 스프링클러 설비의 1차측과 2차측에는 감시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급수개폐 밸브 작동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E. 급수 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템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등은 발할 수 있도록 하고, 템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에서 동작의 유무확인 과 동작시험,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.
(밸브의 완전개방시 수신기에서 확인표시등에 설치될 것)
- F. PREACTION 의 SUPER VISORY PANEL은 VALVE실 밖에 설치토록 한다.
- G. SUPER VISORY PANEL에 연결되는 감지기로는 종합감시반과 연동 될수 있도록 하고 중단저항 은 PANEL 내부에 처리한다.
- H. 계단감지기 및 각 PIT 감지기는 단자함 또는 접속 JOINT를 발신기 10P 단자내에서 처리한다. (중계기 중단처리 불허 및 JOINT BOX 처리불가)

다. 기타 상세한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.

3. 유도등설비 공사

가. 피난구 유도등

(1) 설치기준

- 1)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부분에 설치할 것.
- 2) 직통 계단, 직통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출입구 부분에 설치할 것.
- 3) 제1호, 제2호의 규정에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및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할 것.
- 4)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.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한다.

나. 통로 유도등

1) 복도통로유도등

- A. 복도에 설치할 것
- B.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
- C.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. 다만,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·소매시장·여객자동차터미널·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·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D.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

2) 거실통로유도등

- A.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. 다만,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B.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
- C. 바닥으로부터 높이 1.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

3) 계단통로유도등

- A.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(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)설치할 것
- B.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

4)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

5)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·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

6) 조명도는 통로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부터 0.5 M 떨어진 바닥에서 측정하여 1 LUX 이상이어야 한다.

(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 유도등의 직상부 1M 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 LUX 이상)

7) 통로 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등으로 한다. 다만, 계단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다. 유도등의 전원

1) 설치기준

- A. 축전지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.
- B.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고 그 용량은 당해 유도등을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.
 -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
 -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·소매시장·여객자동차터미널·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
- C.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. 다만,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외부광(光)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
 - 공연장, 암실(暗室)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
 -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

라. 배선공사

- A. 배선공사에 관한 일반사항은 전기 배선공사 시방에 따른다.

마.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도등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.

4. 비상조명등설비 공사

가. 설치기준

- (1)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, 계단 및 그밖의 통로에 설치한다.
- (2)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LX 이상이 되도록 하고 예비 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당해 비상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.
- (3)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 - 1)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
 - 2)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
 - 3)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.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(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)을 두어서는 아니된다.
 - 4)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
- (4)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. 다만,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.
 - 1)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
 - 2)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·소매시장·여객자동차터미널·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
- (5) 영 별표 5 제10호 비상조명등의 설치면제 요건에서 "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안의 부분"이라 함은 유도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1lx 이상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.

나. 기타 상세한 사항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.

5. 비상방송설비 공사

가. 음향 및 취부상태

- (1) 확성기의 음성 출력은 3W (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) 일것.
- (2) 확성기는 각 층 마다 설치하되, 그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, 당해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수 있도록 설치할 것.
- (3)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.8m이상 1.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.
- (4) 5층(지하층은 제외한다)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,000㎡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,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-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,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-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. 다만, 층수가 30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을 포함하여 직상 3개층에 우선경보 후 60초 이내의 간격으로 직상 3개층씩 순차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.
- (5) 다른 방송 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 경보 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.

나. 전 원

- (1)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,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.
- (2)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(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

다. 기타기능

모든 방송의 음향 조정은 방송실에서 가능하며 비상 방송때에는 방재센터에서 이미 MAIN을 조정한 음량으로 자동 또는 수동으로 방송이 가능하여야 한다. 이 때 방송실에서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다.

라. 기타 상세한 사항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.